## 이용약관

##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[ 목적 ]

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합니다)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 규칙, 고시(이하 "전자서명법령 등"이라 합니다) 및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(이하 "정보인증"이라 합니다)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의거 "정보인증"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"정보인증"과 가입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# 제2조 [용어의 정의]

- ① "정보인증"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(이하 "인증업무준칙"이라 합니다)이라 함은 "전자서명 법령 등"의 규정에 근거하여 "정보인증"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합니다.
- ② "등록대행기관"이라 함은 "정보인증"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 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·등록하는 가입자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기관을 말합니다.
- ③ "가입자"라 함은 "정보인증"과의 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"정보인증"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.
- ④ "이용자"라 함은 "정보인증"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⑤ "사고정보"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(IP 및 MAC 주소 등) 및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를 말합니다.
- ⑥ "단말기 지정"이라 함은 단말기(PC, 휴대폰 등)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, 인증서 발급 시 가입 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 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- ⑦ "추가인증"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,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- ③ "2채널 인증"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- ⑨ "비대면 신원확인"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"정보인증"의 "인증업무준칙"에서 지

정한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
⑩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"전자서명법령 등"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# 제3조 [효력 및 변경]

- ① "정보인증"은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"정보인증"의 홈페이지(www.signgate.com)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- ② "정보인증"은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다만, 개정 내용이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- ③ 가입자가 개정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, 전자우편의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, "정보인증"은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## 제4조 [ 약관 외 규정 ]

- ①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"전자서명법령 등"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
- ② "정보인증"은 가입자 및 가입 신청자가 "인증업무준칙"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"정보인 증"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#### 제2장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

## 제5조 [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]

"정보인증"은 인증서의 신규발급, 재발급, 갱신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전자서명인 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## 제6조 [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의 효력 ]

① "정보인증"이 제공하는 범용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.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"정보인증"이 제공하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구분			용도	유효기간
개인	범용		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	1년/3년
	용도제한 용	은행용	은행 업무 정부 민원 업무(단, 전자입찰 등 제외)	1년
		기타	개별 계약에 따름	1년
법인, 단체, 개인사업자			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	1년/3년
게인자립자	용도제한용		개별 계약에 따름	1년
ИН			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인증	1년/3년

②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따라 "정보인증"이 제공하는 인증서로 서명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에 의거한 효력을 가집니다.

## 제7조 [ 인증서의 신청 ]

인증서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1. "정보인증"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합니다.
- 2. 가입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시에 선택한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. 단, 인 증서 신청시 가입 신청자는 "정보인증"이 "인증업무준칙"에서 정한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으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입 신청자는 방문 대신 "정보인증"의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신원확인 정보를 제출합니다.
- 3. "정보인증"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"전자서명법령 등"에 근거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처리합니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- 4. 가입 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 증서를 발급 받습니다. 동 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서 신청은 자동 취소됩 니다.

# 제8조 [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제한 ]

"정보인증"은 다음 각 호의 경우,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.

- 1. 타인 명의의 신청
- 2.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
- 3. 인증서 요금 미납
- 4.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
- 5.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
- 6. 기타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

#### 제9조 [ 인증서의 이용 제한 및 중지 ]

"정보인증"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- 1. 가입자가 사망, 실종,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- 2. 법정대리인(친권, 미성년후견, 성년후견, 한정후견)의 동의가 필요한 신청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발급행위를 취소한 경우
- 3.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,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
- 4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"전자서명법령 등"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5. "정보인증"이 가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,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해킹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
- 6. "정보인증"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- 7. "정보인증"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"정보인증" 또는 가입자의 전자서 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
- 8.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
- 9.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
- 10. 해킹, 명의도용 등 기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# 제10조 [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단 ]

- ① "정보인증"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
  - 2.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  - 3.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- 4.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5.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"정보인증"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 단, "정보인증"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 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"정보인증"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,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"정보인 증"은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

#### 제 3 장 인증서 요금 등

## 제11조 [ 인증서의 종류 및 요금 ]

- ① "정보인증"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"정보인증"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② "정보인증"은 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## 제12조 [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]

- ① "정보인증"은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② "정보인증"은 상호 계약에 따라 인증서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(OCSP), 시점확인서비스(TSA), 기타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③ "정보인증"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## 제13조 [ 환불 ]

- ① 가입자는 인증서를 결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제4호에 따라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
- ③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본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,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 "정보인증"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필요 경비(송금수수료 등)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. 이때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..

## 제14조 [세금계산서의 발행]

- ① "정보인증"은 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 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.
- ② "정보인증"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. 이때 전자세금계산 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.
-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"정보인증"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. 단,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- ④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#### 제4장 당사자 의무 등

#### 제15조 [ "정보인증"의 의무 ]

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

- ② "정보인증"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
-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·훼손·도난·유출,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 에 대한 통보 및 안전조치
- ④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 신원확인
- ⑤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
- ⑥ 기타 "전자서명법령 등"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의 의무

#### 제16조 [ 가입자의 의무 ]

- ① 목적에 맞는 인증서 선택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
-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
-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, 발급기관,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
- ④ 인증서의 발급 용도(이용범위) 내 사용
- ⑤ 인증서 재발급 또는 폐지 사유 발생시 재발급 또는 폐지 신청
- ⑥ 기타 "전자서명법령 등" 및 "인증업무준칙" 상의 의무

#### 제17조 [ 이용자의 의무 ]

이용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1. 목적에 맞는 가입자의 인증서 확인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, 발급기관, 종류, 이용범위,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
- 2. 인증서의 발급 용도(이용범위)에 맞게 사용
- 3. 인증서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여부 검증·확인
- 4. 기타 "전자서명법령 등"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의 의무

##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

## 제18조 [ 손해배상 ]

"정보인증"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## 제19조 [ 면책 ]

"정보인증"은 "정보인증"이 발급한 인증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2채널 인증 수단 중 법무부의 출국정보 조회시 법무부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,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,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 "정보인증"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에 따라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.

## 제20조 [ 재판관할 ]

- ① 본 약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"정보인증" 본점 소재지 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② "정보인증"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.
- ③ 전자서명법 제22조(분쟁의 조정)에 따라 분쟁 조정시 전자문서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 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